

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(권향엽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20826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26. 8. 26.

발 의 자 : 권향엽 · 민병덕 · 박해철
김성범 · 진성준 · 박희승
이강일 · 김남근 · 박용갑
정일영 · 김준환 · 최민희
이광재 · 송재봉 · 백혜련
장종태 · 신정훈 · 임오경
조인철 · 오세희 의원
(2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「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과 「산업재해보상보험법」에 따라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에 대하여 그가 부담하는 보험료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.

그러나 소상공인은 경기 둔화, 매출 감소, 예기치 못한 경영위기, 휴 · 폐업 위험 등 다양한 위험에 노출되어 있으며, 기존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만으로는 소상공인의 사업 지속, 휴 · 폐업 위험 완화 및 재도전을 충분히 지원하는 데 한계가 있음.

특히 신규 정책보험의 보험료를 정부가 직접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하려면 명시적인 법률 근거가 필요하며,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을 활용하기 위해서도 기금 사용 항목에 해당 보험료 지원 근거를 명확히 둘 필요가 있음.

이에 현행 제12조의7을 소상공인에 대한 보험료 지원 일반조문으로 정비하여, 고용보험료 지원, 산업재해보상보험료 지원 및 소상공인의 경영안정, 사업 지속, 휴·폐업 위험 완화, 재도전을 위한 정책보험료 지원을 하나의 조문 체계로 통합하려는 것임.

또한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의 사용 항목도 현행 고용보험료 지원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료 지원을 통합하여 “제12조의7에 따른 보험료 지원”으로 정비함으로써, 기존 사회보험료 지원과 신규 정책보험료 지원을 일관된 기금사업 체계에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(안 제12조의7 등).

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2조의7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12조의7(소상공인에 대한 보험료의 지원) ① 정부는 소상공인의 경영안정 및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험료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.

1. 「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」 제49조의2제6항에 따라 소상공인이 부담하는 고용보험료
2. 「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」 제49조제1항에 따라 소상공인이 부담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료
3. 그 밖에 소상공인의 경영안정, 사업 지속, 휴·폐업 위험 완화 또는 재도전을 지원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이 부담하는 보험료

② 제1항에 따른 보험료의 지원 대상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며, 지원 수준·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고시로 정한다.

제21조제1항제17호의2 중 “고용보험료”를 “보험료”로 하고, 같은 항 제17호의3을 삭제한다.

부 칙

이 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u>제12조의7(소상공인에 대한 보험료의 지원) ① 정부는 「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」 제49조의2제1항에 따라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에 대하여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부담하는 고용보험료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.</u> <u>② 정부는 「산업재해보상보험법」 제124조제1항에 따라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에 대하여 「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」 제49조제1항에 따라 부담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료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.</u> <u>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고용보험료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료의 지원 대상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며, 지원 수준·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중소</u>	<u>제12조의7(소상공인에 대한 보험료의 지원) ① 정부는 소상공인의 경영안정 및 사회안전망강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험료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.</u> <u>1. 「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」 제49조의2제6항에 따라 소상공인이 부담하는 고용보험료</u> <u>2. 「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」 제49조제1항에 따라 소상공인이 부담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료</u> <u>3. 그 밖에 소상공인의 경영안정, 사업 지속, 휴·폐업 위험완화 또는 재도전을 지원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이 부담하는 보험료</u>

<u>벤처기업부장관 고시로 정한다.</u> 제21조(기금의 사용 등) ① 기금 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위하 여 사용할 수 있다. 1. ~ 17. (생 략) 17의2. 소상공인에 대한 <u>고용보 험료</u>의 지원 17의3. 소상공인에 대한 <u>산업재 해보상보험료</u>의 지원 17의4. ~ 25. (생 략) ② ~ ⑤ (생 략)	② 제1항에 따른 보험료의 지 원 대상은 대통령령으로 정하 며, 지원 수준·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 기업부장관이 고시로 정한다. 제21조(기금의 사용 등) ① ---- ----- -----. 1. ~ 17. (현행과 같음) 17의2. -----<u>보 험료</u>----- <u><삭 제></u> 17의4. ~ 25. (현행과 같음) ② ~ ⑤ (현행과 같음)
--	---